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05
----------	------

발의연월일 : 2023. 4. 27.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김은영 의원, 곽동환 의원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22.12)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비 지급에 관해 관련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5항)
- 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46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정활동비는 [별표 1]” 을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 로, “달성군” 을 “달성군의회”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2]의” 를 “별표 2에 따른” 으로, “달성군” 을 “달성군의회” 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여행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2.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 중 “달성군”을 “달성군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생 략) 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u>달성군</u>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u>별표 1-_____ 달성군의회 _____</u>.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생 략) ②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u>달성군</u>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생 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u>별표 2에 따른 _____ 달성군의회 _____</u>.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u>의장·부의장과 의원의 구분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 중 제1호를 준용하여 국내 여비를 지급한다.</u> ③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국외 여비를 지급한다. <u>1. 항공운임, 준비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5]</u> <u>2. 일비, 숙박비, 식비 :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4] 중 4, 의원은 같은 규정의 [별표 4] 중 5</u> <u><신 설></u>	제4조(여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여행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u>지급한다.</u> <u><삭 제></u> ④ <u>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u>

④(생략) <u>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u> <u>의원이</u> <u>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u> <u>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u> <u>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및 구속된</u> <u>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의정활동비</u> <u>(그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u> <u>일할로 계산한다)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u> <u>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u> <u>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u> <u>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u> <u>다.</u> 〈신설〉 〈신설〉 <u>제6조(준용)</u> <u>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u> <u>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의</u> <u>예에 따른다.</u>	<u>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u> <u>를 준용한다.</u> ⑤(현행과 같음) <u>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u> <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u> <u>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u> <u>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u> <u>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u> <u>1.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u> <u>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공소</u> <u>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u> <u>2.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출석</u> <u>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u> <u>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u>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u>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u> <u>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u> <u>급하지 않는다.</u>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u>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u> <u>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u> <u>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u> <u>급한다.</u> <u>제6조(준용)</u> _____ _____ <u>달성군의회</u> _____.
--	---

□ 「지방자치법(법률)」 (2021.12.28. 타법개정, 2022.1.13. 시행)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2022.10.4. 타법개정, 2023.4.5. 시행)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2023.3.2. 일부개정·시행)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해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

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법률)」 (2022.12.27. 일부개정 · 시행)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3.1.6. 일부개정 · 시행)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